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번호	21677
----------	-------

제출연월일 : 2026. 9. 30.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급변하는 미래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도입하려는 핵추진잠수함을 신속히 획득하고 이를 전력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입법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 무기체계로서의 특수성, 원자력 사용 시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사회에 대한 신뢰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 등에 관한 「방위사업법」이나 민수(民需)용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원자력안전법」 등 현행의 규정 체계를 개별적으로 보완하기보다는,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최초 사례인 핵추진잠수함에 대하여 그 획득·운영에 관한 특례 사항과 군사용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율 사항, 그 밖에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정사업으로서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 확립과 국제평화 유지를 도모

하며,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과 기본 이념(안 제1조 및 제2조)

- 1) 이 법은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과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 확립과 국제평화 유지를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국가 등은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과 안전관리 등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나.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에 관한 특례(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1) 국방부장관 등은 「방위사업법」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핵추진잠수함원자력 관련 핵물질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그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2) 방위사업청장 등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소유로 함.

다.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13조)

- 1)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이전 등과 관련한 중요 정책, 설치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핵추진잠수함원자력에 관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를 받은 사항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2) 일부 심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획득·운영분과위원회와 원자력안전분과위원회를 각각 두고,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라.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승인(안 제18조)

- 1)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을 하려는 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등의 설치·운영·해체,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운영·해체 등 행위별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2) 국방부장관은 방사성물질 등으로 인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거나, 그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고려하여 그 승인·변경승인 신청을 심사하도록 함.

마.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안전관리(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 1)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준칙을 작성하며, 그 평가결과 및 준칙을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 승인을 받은 자 등은 지진·화재 등 천재지변과 그 밖의 재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장해방어조치를 실시하고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3) 국방부장관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또는 그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사능오염원의 제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조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핵추진잠수함산업 기반의 조성(안 제39조 및 제41조)

- 1)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핵추진잠수함 획득과 안전관리 및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2)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핵추진잠수함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핵추진잠수함 관련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과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 확립과 국제평화 유지를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사업의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은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과 안전관리 등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1.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2. 핵추진잠수함의 운용·개발에 필요한 원자력(이하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이라 한다)의 생산 또는 기술적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로와 그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

며, 방사능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3. 최신의 원자력기술 등 국방과학기술을 반영하여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의 적용을 위한 역량을 확보할 것

4.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추진잠수함”이란 군(軍)이 운용하거나 운용하기 위하여 개발 중인 잠수함으로서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을 말한다.

2. “핵추진잠수함시설”이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서 핵추진잠수함의 운용 등 핵추진잠수함 관련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핵추진잠수함원자로”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생산 또는 기술적 검증을 목적으로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안전관계설비”란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핵연료가공시설”이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6.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이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 또는 활용을 말한다.

7. “핵추진잠수함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핵추진잠수함 및 핵추진잠수함원자로를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는 사업

나. 핵추진잠수함 및 핵추진잠수함원자로와 관련된 전력화지원요소(「방위사업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의 획득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다. 핵추진잠수함시설의 설치, 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라. 핵추진잠수함의 운용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마.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바. 핵추진잠수함 및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과 관련된 산업(이하 “핵추진잠수함산업”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핵추진잠수함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과 그 사업 추진에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시행할 때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핵추진잠수함 승조원 등 관련 근무자 및 국민의 생명·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핵추진잠수함 및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획득과 안전관리 및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핵추진잠수함사업의 국가안보상 중대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 및 정보의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및 기관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소속 직원들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핵추진잠수함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및 기관은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목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핵추진잠수함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및 기관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핵추진잠수함원자로와 안전관계설비 및 핵연료가공시설(이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핵추진잠수함 및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장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군형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핵추진잠수함사업의 기반조성

제1절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 특례

제7조(사업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핵추진잠수함(핵추진잠수함원자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관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1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험평가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 시험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에 관한 특례) 「방위사업법」 제46조의5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관련 방위사업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핵추진잠수함원자력 관련 핵물질의 확보가 지연된 경우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제협상이 지연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설치지역 지정이 지연된 경우
4.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국방연구개발의 절차에 관한 특례)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을 위하여 핵추진잠수함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개발성과물 귀속에 관한 특례)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핵추진잠수함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12조(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추진 목적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핵추진잠수함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생산에 관한 사항
4. 핵추진잠수함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핵추진잠수함의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7.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핵추진잠수함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9. 핵추진잠수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재원(財源)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해군참모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제17조에서 같다)·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국방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
 3. 핵추진잠수함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과 관련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5. 「방위사업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중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사항
 6. 핵추진잠수함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7.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승인·변경승인(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지위 승계 승인을 포함한다), 제19조에 따른 표준설계승인·변경승인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정지에 관한 사항
 9. 핵추진잠수함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핵추진잠수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2. 핵추진잠수함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방위사업청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2. 합동참모의장 및 해군참모총장
3.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이 「방위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략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1. 획득·운영분과위원회(다목의 경우에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가. 제2항제3호의 사항

나. 제2항제5호의 사항

다. 전략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원자력안전분과위원회(나목의 경우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가. 제2항제8호의 사항

나. 전략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 ⑦ 제6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⑧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⑨ 전략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지역의 지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핵추진잠수함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핵추진잠수함시설에 관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핵추진잠수함시설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심의·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

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시설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허가등. 다만,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핵추진잠수함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으로 한정한다)
6.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절대보전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협의
8.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0.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신고·협의
 12.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 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허가
- ②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

제1절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16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에 관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핵추진잠수함원자력에 관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안전관리 및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4.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핵추진잠수함 관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6. 소요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국방부장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부문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부문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부문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절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운영 등

제18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승인)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별로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행위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행위를 통합하여 각각 승인받을 수 있다.

1. 핵추진잠수함원자로(안전관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설치
 2.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운영
 3.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해체
 4.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
 5. 핵연료가공시설의 운영
 6. 핵연료가공시설의 해체
 7. 제27조제2항 단서 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사용정지 후 재가동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청인이 해당 승인 신청에 관하여 이미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승인 여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과 관련하여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변경신고를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위치, 구조 등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 인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해당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일 것[국방부장관에게 설계에 대한 사전

검토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항제1호·제4호의 승인(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통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관한 제5항 본문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⑧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운영 승인을 받은 자(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통합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운영 승인(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통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⑨ 국방부장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해체 승인을 한 경우 해당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에 대한 운영 승인의 효력은 상실한다.

⑩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또는 핵연료가공시설을 해체한 후에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해체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⑪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제8항에 따른 지위 승계에 관한 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자(이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계속 부합되는지 여부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계속 준수하는지 여부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방법·절차 및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표준설계승인) ① 제1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로서 같은 설계의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복 설치하려는 자는 표준적인 설계(이하 “표준설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승인을 받은 자가 표준설계에 관하여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준설계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표준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설계의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반복 설치를 위하여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이미 설치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표준설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표준설계승인을 받은 자에게 해당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0조(계량관리규정의 승인)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이하 “계량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당 핵물질의 사용개시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계량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계량관리규정이 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는 국방부령

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 용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제작·수입된 운반용기 또는 사용 중인 운반용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안전관리

제22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정지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제18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8조제11항의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 승인을 받은 자(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통합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5.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운영 승인을 받은 자(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통합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6.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설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용정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통합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록과 비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그 사무실·사업장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5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 등의 안전관리준칙 작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안전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그 안전관리준칙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3.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② 안전관리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연료물질과 방사성물질등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사항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안전한 설치, 운영 또는 해체 등을 위한 사항
3.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에 대한 물리적방호 및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핵추진잠수함원자력 방사능비상 및 방사능재난에 대한 관리체계 및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준칙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안전성 및 종사자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에게 안전관리준칙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그에 소속되거나 그 지휘·감독을 받아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준칙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의 의무)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의 안전성에 위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이행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나 우려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사용정지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성능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이 안전관리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에게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명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면 재가동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정지의 사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방어조치를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화재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에게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사용정지, 방사성물질등의 이전·오염의 제거와 그 밖에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제18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명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면 재가동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정지의 사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운반·입항 등의 신고)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시설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장으로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그가 소지하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 ① 누구든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안전법」 제68조의4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방사성폐기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려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방법·절차 및 관리비용에 관하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하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으로 본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려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⑤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40조를 따른다.

제31조(사용후핵연료의 처분) 핵추진잠수함용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2조(방사능재난 발생 시 조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과 관련한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또는 그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사능오염원의 제거, 방사능오염의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조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과 관련하여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협조 요청 또는 명령 및 협조·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 분야에 대한 자격

제33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 분야에 대한 자격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선의 취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지시·감독 하에 핵연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다.

1.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3호·제4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핵추진잠수함원자로조종감독자 자격증명

2. 핵추진잠수함원자로조종사 자격증명
3. 핵추진잠수함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자격증명
4. 핵추진잠수함핵연료물질취급자 자격증명
5. 핵추진잠수함방사선취급감독자 자격증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원자력안전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원자력안전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35조에 따라 자격증명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이 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증명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 또는 제133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

람(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건설 및 개수·보수에 관한 업무 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재료·부품 등의 납품·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대여 등 금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명서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35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그 증명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 또는 제38조에 따른 전문기관(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 과정에서 소속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종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 및 방사선장해방지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 관련 안전조치 및 수출입통제
3.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물리적방호
4.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사고 대비 방사능방재

②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 또는 제38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속 종사자로 하여금 받도록 한 교육·훈련의 이수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종사자로 하여금 국방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법과 대한민

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규약”이라 한다)를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국제규약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제규약조사관”이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규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여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④ 국제규약조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규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핵연료물질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봉인을 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이동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검사 또는 감시설비의 설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국제규약조사관은 국방부장관의 확인 후에 국제규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증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 및 핵연료물질 등에 관한 안전관리·안전조치 및 수출입통제에 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

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설립,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핵추진잠수함 획득과 안전관리 및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수요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수급 지원
4.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5. 국내 전문인력의 관련 국제기구, 해외 연구소 등에 대한 파견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또는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하여 핵추진잠수함 연구개발 및 운영·관리 등과 관련한 대학·연구소 등 법인·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제협력 등의 촉진)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사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핵추진잠수함산업 기반의 조성 등)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핵추진잠수함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2.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3. 핵추진잠수함 및 핵추진잠수함원자력 관련 기업 육성
4. 핵추진잠수함 관련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
5. 그 밖에 핵추진잠수함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2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8조부터 제32조까지의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

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3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인·군무원 또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전략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3. 제3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4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
4.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일반연구기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대표, 임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해당 기관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계약상대자, 그 하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의 대표, 임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제44조(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른 전략위원회 · 분과위원회 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위원

2. 제3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
관의 대표 및 임직원

제4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
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
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
다.

제5장 벌칙

제46조(벌칙) ① 정당한 권한 없이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를 조작
· 사용 또는 변경하여 방사성물질등을 취급 · 유출함으로써 사람의 생
명 또는 신체를 위협하게 하거나 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47조(벌칙)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並科)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방어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장애방어조치를 실시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한 사람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에 따른 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려는 경우 그 설립 또는 지정과 관련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전략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특례) 제13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 만료 당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전략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다.

제4조(핵추진잠수함 관련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추진 중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방연구개발사업은 이 법 제3조제1항제7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제5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3조제1항제7호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 전력화지원요소의 획득, 원자력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추진에 재정소요 발생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제1항제7호	제2호: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

2. 상세 사유

- 이 법률안은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 규모 및 시기, 연구개발·건조계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규모·성능·배치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을 전제로 하여야 함.
- 이에 구체적인 비용 및 산출근거를 제시할 경우 핵추진잠수함의 전력화 계획 및 군사적 능력에 관한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공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III. 부대의견

- 해당없음

Ⅳ. 작성자

○ 성명

담당	정책소통담당관	전력정책국장(핵심정책기획단장 직무대리)
사무관 김유리	서기관 김민호	고위공무원 김기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무관 김유리	02-748-5657	kimyr5@korea.kr